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5. 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4월 28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5년 5월 4일
- 다. 상정일자 : 제196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5월 8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세열

가. 제안이유

정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인력의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만족과 대민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복지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6급 이하 사회복지인력 정원 5명을 증원하고
규제개혁추진단 한시정원('15.3.30.자) 6급 이하 1명을 감함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동(洞)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계획」에 따라 2013.11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협조하여 실시하는 「동 주민센터 복지 기능 보강지침」 및 2014.12.8.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그 동안 동(洞)주민센터

로 찾아오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민원상담 중심의 수동형 복지서비스에서 이제는 사회복지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동네 구석구석까지 직접 복지대상자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동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필요한 사회복지 인력 정원을 늘려서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마포구 정원을 “1,301명”에서 “1,30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2명”에서 “1,276명”으로 증원함. (단위 : 명)

직급별 \ 기관별	현 행	개 정 안	증감
총 계	1,301	1,305	4
집행기관	1,272	1,276	4
구의회사무국	29	29	0

안 별표 3에서는 총 계란, 일반직 계란 및 6급 이하 계란을 다음과 같이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표에 반영함. (단위 : 명)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305	1,305			
일반직 계	1,298	1,298			
6급 이하	1,231	1,231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2014.12.8.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인력 정원을 늘려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내실화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실시 등 단계적 복지서비스 확대 실시 계획에 따라, 2015년~2017년 연차별 확충 사회복지인력 정원을 5명 증가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 상 정원 1,301명 중 1명이 규제개혁추진단 한시정원(2015.3.30)으로 자동 감소하게 되어 있어, 조례에서 정원을 1,300명으로 감소하여야 하나 이를 감소시키지 않고 본 조례 개정 시 마포구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2명”에서 “1,276명”으로 조정하여 정원을 4명만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총 정원은 5명(사회복지직 4명, 행정

직 1명)이 증가한 것임.

- 사회복지인력 확충인력에 대한 주요업무로는 사회복지직 4명은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장애인 및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현장을 찾는 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직 1명은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자 접수, 복지서비스 대상 조사 및 증명서 발급 등 복지행정 업무를 맡게 되며, 2015년도 마포구 기준인건비는 1,067억 1,878만원으로, 사회복지인력 증원에 따른 부담액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우리 구는 연간 1억 857만원으로 자치구 부담률 25%를 적용하면 약 2,715만원이 증가하게 되나, 우리 구는 현재 육아휴직 등으로 104명의 직원을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있고 휴직자에게는 봉급수당이 미지급하게 되어 있어 이번 사회복지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同) 조례는 2015.4.2.~ 4.14.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도 없었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또한 이번 조례개정은 마포구 관내 현장중심의 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복지인력 증원으로 증원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